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 [별표4]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·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 해야 하고, 직불전자지급수단(제로페이 등)의 경우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지급원인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5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'22년 1월 복사용지 구입에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연말까지 카드 이용대금을 미입금

사례2> 신용카드 결제 건을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아닌 채권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채권자에게 중복지급하거나 카드 결제 후 회계처리 누락

사례3> '20~'21년 법인카드 이용대금을 기한 초과하여 95일 지연 입금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연입금, 중복입금, 미입금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